

#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정관[요약본]

제정 2019년 6월 20일

[정관원본 14매 -----> 요약 3매]

##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조합은 국내외의 정유, 석유화학, 발전소 등의 플랜트 관련, 수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설계·건설·유지·보수 및 기자재 공급 등의 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사업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활동을 복돋우어 국위선양 및 국가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더불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업무구역 안에 소재한 전라남도 여수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으로 한다.

##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42조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 제4조의 업무구역 안에서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 ② 조합은 매회계연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불리한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4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로서 탈퇴 또는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12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 ① 초기 출자금은 정관의 개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은 10좌를 균등하게 출자하여야 하며 일좌 금액은 1,000,000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출자 총 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된다.
- ③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출자 좌수를 증좌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증좌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⑥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⑦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⑧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⑨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1. 기본회비 (운영비 : 정액제로 1,000,000원/월로 정한다)
    - 회비는 월1회 납부를 기본으로 하나, 분기 1회(3개월분), 반기 1회(6개월분), 년 1회(12개월분) 등으로 회원사 사정에 따라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조합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원 또는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사무실 임대료(사용료)등은 별도 징수 없이 기본회비 등에서 충당한다.
    - 알선수수료, 공동판매·구매수수료 등이 필요할 시 이사회 등을 통해 별도 협의 후 징수토록 한다.
-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4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 3 장 사 업

제22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기타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6.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7. 기술개발·신제품개발 및 경영기법 등의 공동연구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9.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0. 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업무

1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제24조(단체적계약)

①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총 조합원 1/4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이하생략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5 장 임 원

제40조(임원의 정수) ① 본 사업조합은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2명 이상 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근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근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7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8조(상근이사의 직무) ①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하 생략

제58조(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 수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6 장 회 계

제61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7 장 해 산 과 청 산